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0 선고 2020가단1362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 2020. 7. 16

판결 선고 2020. 8. 20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가. 33,130,188원 및 그 중 30,526,528원에 대하여 2020. 6. 10.부터,나. 27,384,521원 및 그 중 27,250,137원에 대하여 2020. 3. 27.부터각 2020. 7. 10.까지는 연 9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피고 회사와 E 주식 회사 사이의 F Service 이용신청계약에 관련하여 사용료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, 피고 회사와 G 주식회사 사이의 전문점거래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한편,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정해진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6%의, 그 다음날부터는 연 9%이다.

순번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	연대보증인
1	E(주)	50,000,000원	2018. 10. 4.~ 2019. 10. 3.	피고 D
2	G(주)	50,000,000원	2019. 2. 12~ 2020. 2. 11.	피고 D

나. 이후 위 각 피보험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 다는 이유로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E(주)에게 2019. 9. 24. 5,000만 원을, G(주)에게 2020. 2. 25. 27,250,137원을 각 지급하였다.

다. 이후 피고 D는 2020 . 6. 9.까지 원고에게 합계 19, 473, 472원을 지급하였다.

위 변제금은 순번 1번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원리금 채무에 충당되었는데, 피고들이 2020.6. 10.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,

순번	피보험자	잔존원금	지연손해금
1	E(주)	30,526,528원	1. 2020. 6. 9.까지 지연손해금 2,603,660원 2. 2020. 6. 10.부터 연 9%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
2	G(주)	27,250,137원	1. 2020. 3. 26.까지 지연손해금 134,384원 2. 2020. 3. 27.부터 연 9%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33,130,188원(= 위 잔존원금30,526,528원 + 2020. 6. 9.까지의 지연손해금 2,603,660원) 및 그 중 30,526,528원에대하여 2020. 6. 10.부터, ② 27,384,521원(= 위 잔존원금 27,250,137원 + 2020. 3. 26.까지의 지연손해금 134,384원) 및 그 중 27,250,137원에 대하여 2020. 3. 27.부터 각2020 . 6. 1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20 . 7. 10.까지는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피고 D는1,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,원고는 위 변제내역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변경하였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게 되었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강민